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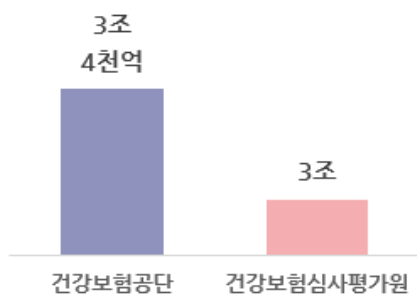
-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 집적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보험산업 내 공유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지원을 위한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21. 2. 9)하고 공공기관 및 개인 의료 데이터가 공존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을 발표('21. 2. 24)함
 -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공유에 대한 정보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에 대한 우려로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한 사례가 없음
- 핀란드, 대만 등은 이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국가 자산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
 - 핀란드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통합시스템인 칸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차 데이터 활용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공공 보건의료 통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함
 -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 온 대만도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Private-Public Partnership(PPP)을 강조하고 최근 민간 보험회사에게 보건의료 데이터의 부분공유를 허용함
- 국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중 하나로 보험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 인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화된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험업권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하며,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정보 보유자 구제방안 등 구체적 제도 마련도 필요함
 - 보험업계는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 데이터 활용에 따른 엄격한 관리와 책임을 부과하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출피해보상보험 의무화 등도 제안 가능함



1. 검토 배경

-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의료 데이터¹⁾ 기반의 디지털케어가 부상함에 따라 건강보장체계 내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²⁾의 집적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국내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기준 약 6조 건이 넘는 수준으로 데이터의 질과 보유량 측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³⁾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유자격, 보험료, 진료, 투약검진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투약내역과 의약품, 의료지원 등의 정보, 국립암센터는 암 발생 현황 통계 등을 보유 중임
-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 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산업 내 공유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지원을 위한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21. 2. 9)하고 공공기관 및 개인의료 데이터가 공존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을 발표('21. 2. 24)함
- 본고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을 공·사가 함께 하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공·사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공이익의 창출과 이를 위해 국내 보험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민의료보험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핀란드와 대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함

〈그림 1〉 공공의료 빅데이터 수(2019년 현재)
(단위: 건(누적 기준))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1〉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진료 데이터	진료 관련(의무기록, 처방, 입·퇴원, 의료영상) 데이터
임상연구 데이터	의약품, 의료기기 등 임상실험 데이터
보험 관련 데이터	보험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결과 등
기기 기반 데이터	의료기기 및 환자 모니터링 장치 기반 데이터
오믹스(Omics) 데이터	유전체 등 분자 수준의 생성된 여러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웨어러블, IoT 기기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
앱, 소셜미디어 데이터	건강포털, SNS에서 수집된 데이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을 재인용함

- 1)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진료, 임상, 보험 관련 데이터 외 유전자, 디지털·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데이터로 확장 중임
- 2)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보(데이터)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함
- 3)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92%로 유럽(84%), 미국(6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임(건강보험공단)



2. 국내 공·사 보건의료 데이터 축적 및 공유 현황

-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15년까지 의료기관 데이터의 정보화 위주로 집적되었으나 이후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결합 중심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축적과 활용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함
 - '05년 병원 데이터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EMR) 사업을 시작으로 진료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
 - '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입력·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⁴⁾
 - 또한 자발적 참여자의 유전체정보를 바탕으로 희귀질환자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바이오·의료 정보 빅데이터를 '20년부터 추진 중임
- 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부상하면서, 이에 필수적 요소인 개인의 능동적 참여에 기반한 개인주도형 의료 데이터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발표함('21. 2)
 - 개인은 마이 헬스웨이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건강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을 한번에 조회·저장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저장한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개인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함
 - 특히 개별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연동시켜 유의미한 개인건강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년 데이터 3법⁶⁾이 시행되었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⁷⁾이 제시되는 등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한 사례가 없고 부정적 인식이 존재함
 -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하고 결합 데이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결합전문기관은 2개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기술적 처리를 지원하며 반출 심사를 담당함
 - 하지만 데이터 3법 통과 후에도 시민단체는 가명정보 재식별에 따른 정보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에 우려를 표명함
 -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회사에게 표본데이터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제공이 보험가입차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데이터 3법 개정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보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법적기반이 생겼으나 아직도 데이터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4) 이병철(2021. 3),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5) 개인주도로 자신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6)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3. 해외 보건의료 데이터 집적 및 공·사 정보 공유 사례

가. 핀란드

- 핀란드는 '07년부터 미래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e-헬스로드맵 정책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및 진료기록, 유전체 데이터 등 헬스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시스템, 즉 칸타 시스템을 구축함
 - '07년 e-헬스로드맵 정책을 통해 칸타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고, 정밀의료에 필요한 유전체 데이터 정보보유를 위해 바이오뱅크를 구축했으며, '13년 핀젠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유전자 정보와 국민의료정보를 결합시킴
 - 칸타 시스템을 통해 핀란드 전 국민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데이터의 통합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19년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강의료분야의 2차 데이터 활용법을 개정하여, 구축된 통합데이터 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함
 - 특정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정해진 목적 외 과학연구, 통계 작성, 개발 및 혁신활동, 지식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⁹⁾
 - 데이터 개방 목적, 범위, 정보보호, 허가절차, 허가조직 등을 규정하고 사회·보건 분야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사용 권한을 갖는 조직(Findata)을 출범('20)시켜 다수기관 데이터에 대한 통합 사용허가와 다양한 데이터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Findata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다수의 기관 데이터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적 중복 없이 신속하게 허가절차가 이루어져 다양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짐
- 제약사나 연구기관, 건강관리 사업자 등 다양한 기업들은 칸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공공 보건의료 통합 데이터¹⁰⁾뿐만 아니라 개인건강정보까지 정보주체자의 동의 후 접근이 가능함
 - 헬스케어서비스 회사가 칸타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Self-Monitoring Plan을 제출하고, 시스템 제조회사와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을 받아야 함
 - Self-Monitoring Plan은 의료보건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고객정보 접근 통제 및 관리감독 등을 포함함
 - 개인은 칸타 시스템과 연동되는 마이 칸타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료 기록, 약제처방 기록, 데이터 이동 기록 등을 볼 수 있으며 개인 건강관리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개인건강정보도 업데이트가 가능함

8)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맵으로 의료서비스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하는 정책임(건강보장 ISSUE&REVIEW, 「핀란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사례 적용방안」, 제19호)

9) 건강보장 ISSUE&REVIEW(2020. 1), 「핀란드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운영사례」, 17호(원 출처: Act on the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2019. 4),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10) <https://www.kanta.fi/en/professionals/connection-models>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약 1,661개 민간 헬스케어서비스 회사가 등록되어 있음

나. 대만

-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대만은 중앙건강보험청(NHIA)이 보유한 의료, 약제, 검사 데이터를 '13년부터 디지털화하였으며 최근 개인건강데이터를 망라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함
 - NHIA는 '13년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약제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16년에는 검사결과 및 이미지 파일도 포함하는 의료정보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확장함
 - 모든 국민이 NHIA가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14년 개인화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건강계좌 시스템(My Healthbank)를 구축하여 실시간 개인의료정보와 보험상태를 확인하도록 함¹¹⁾
 - '20년 12월 NHIA가 보유한 환자 및 의료기관 데이터 외 개인건강데이터를 망라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건강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 산업혁신에 응용, 관련 인재육성 등에 산·관·학 각계의 연계를 강조함¹²⁾
- 또한 NHIA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 향상과 활용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함
 - NHIA는 '00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학술·비학술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개방하였으나, 시민단체 반대 여론으로 '13년 11월 이후 비학술 목적의 민간기업 제공을 중단한 바 있음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텔레마케팅 회사, 사기조직 등에 판매한 사건 발생이 빈번으로 작용함
 - '16년 정보통합신청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고, 동 센터를 통해 필요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격 기관은 질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함(1단계 개방)
 - '19년 중앙건강보험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기업에 한시적으로 신청을 허용함(2단계 개방)
 - 의료정보 제공 신청 시 심의회에 정보활용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함
- '20년 3월 대만 복지부 건강보험청(NHI)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의 제공을 위해 NHI의 일부 데이터를 민간 보험회사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생명보험회사와 협의에 들어감¹³⁾
 - 대만 NHI는 사망자의 건강보험 데이터 공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수정하여 민간 보험회사가 식별정보(이름, 신분증 번호 등)를 제거한 사망자(비자연인) 350만 명의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민건강보험 보험인의 정보통합응용센터의 작업요점』 제5조 신청자격 중 '개인 또는 법인이 위생복지 산업의 연구 수요'를 추가함
 - 보험회사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건강보험 인수 통계, 보험료 통계, 의료서비스 관리 관련 통계, 의약품 및 의료 재료 통계, 한방 치료 통계 등이 포함됨¹⁴⁾
 - 한편, NHI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의 일부는 건강보험기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¹⁵⁾

11) 최근 생명보험사 최초로 NanShan Life Insurance는 My Healthbank와 연동시켜 가입 시 필요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도록 함

12) 2020國家級人體生物資料庫整合平台年會 발표자료(2020. 12. 15)

13) <https://www.digitimes.com/news/a20200305PD210.html>

14) 대만 건강보험청 Website, <https://data.nhi.gov.tw/Datasets/DatasetList.aspx?c=1>

다. 일본

- 일본은 개인건강 데이터 통합플랫폼 'PeOPLe(Person centered Open Platform for well-being)'를 구축을 계획하고,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2025년 완료 예정)¹⁶⁾
 - '16년 제안된 PeOPLe는 다양한 디지털 건강 및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저장하며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필요한 질병기록, 약물투여 등 치료이력과 검진데이터 등을 활용 가능함
- 이미 '17년 5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익명가공의료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개발 및 신산업 발굴에 활용하도록 함
 - 일본정부는 높은 정보보안기술과 익명가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 사업자' 인증을 해주고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익명 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자는 진료기록 등 익명 가공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병원 등 의료기관은 정보 주체 사전통지 후 개인의 공유 거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비식별 처리된 의료정보를 인증된 이들에게 제공이 가능함
 - 의료정보작성 사업자로써 일본 의료데이터센터(JMCD)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조합으로부터 비식별화된 검진 데이터, 의료 데이터, 보험금 지급 데이터 등을 받아 가공하여 보험회사에게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일본 민간보험회사는 JMCD로부터 받은 건강정보를 건강나이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함



4. 시사점

- 핀란드, 대만, 일본 등 해외 국가는 데이터 기반 질병 진단 및 예측, 의료 AI, 신약개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미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가전략 자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들 국가 정책의 핵심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활용 확대임
 - 핀란드는 칸타 시스템 구축 및 핀데이터를 통해 헬스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시키고 헬스케어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성공함
 - 헬스케어 산업 무역 흑자가 3.73억 유로('03년)에서 10.58억 유로('18년)로 증가함¹⁷⁾
 -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 온 대만정부도 최근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PPP)을 강조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¹⁸⁾
 - 일본은 보건의료 데이터 작성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제3자가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유방식이 핀란드와 대만과 다소 다르지만, 시장 내 민간회사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함

1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Ye Fengming 사무총장 健保資料人工智慧應用研討會 기초발표 내용을 참고함

16)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6), 『보건의료분야에서의 ICT활용 추진 간담회 제언서』

17)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0. 3), 『KPMG ISSUE MONITOR』, 제124호

18) 2020國家級人體生物資料庫整合平台年會(2020. 12. 15) 발표자료를 참고함

- 또한 핀란드와 대만은 보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유출 위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또는 전략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킴
 - 핀란드는 회사 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인증과 정기적인 갱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
 - 대만은 민간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사망자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완화시킴
- 최근 정부도 보건의로 데이터 활용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을 단순한 데이터의 축적을 넘어 주요 보건의로 데이터 활용과 성과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보건의로 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연계 및 공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준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과 그간 보수적 입장을 보여 온 공공데이터 보유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결합 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결합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활용 성과를 도출할 예정임¹⁹⁾
- 국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중 하나로 보험회사는 공공 보건의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 인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공공 보건의로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화된 위험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위험을 보장하거나 적정 위험률 산출로 보험료를 낮추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음
 -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위험률 산출이 어렵던 합병증 환자 및 난임부부 대상 상품 개발할 수 있고, 위험 세분화를 통해 유병자 대상 보험료도 다양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음
 - 또한 여러 분야의 결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미래 의료비 증가를 저감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불안감과 보건의로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서적 기피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험업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 금융분야 등 타 분야의 데이터 거래 공유 활성화 움직임과 달리 개인건강정보의 민감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 분양 및 공유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높은 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보험업계는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건의로 데이터 활용이 소비자의 위험 보장 확대와 안전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보건의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활용 회사에 엄격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와 개인 의료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보유자 구제방안 등 제도적 보완도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활용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되, 동시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건의로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유출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의 의무가입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9) 보건복지부 발표내용(2020. 3. 16), 「보건의로 데이터 정책방향」, 제3회 데이터법정책 온라인 월례 포럼